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4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민선6기 하반기 신임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약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 조직안정을 기하면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보강하며 능동적,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과소명을 변경함(안 제3조, 제4장제1절·제2절·제4절)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실,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정책과,
창조산업과 ⇒ 기업지원과, 승강기경제과 ⇒ 경제교통과,
산림녹지과 ⇒ 산림과, 녹색환경과 ⇒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사업소,
문화센터 ⇒ 평생교육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나.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안 제3조, 제7조, 제4장제1절·제2절·제4절)

- 인구증가시책 추진: 기획감사실 ⇒ 행정과
- 기업관련 업무 조정: 승강기경제과 ⇒ 기업지원과
- 교 통 및 운 수 : 안전총괄과 ⇒ 경제교통과
- 문화예술행사 기획유치: 문 화 센 터 ⇒ 문화관광과
- 박물관, 문화원사, 무형문화재: 문화센터 ⇒ 문화관광과
- 평생교육진흥 및 기획: 창조산업과 ⇒ 평생교육센터
- 도서관 업무: 문 화 관 광 과 ⇒ 평생교육센터
- 청소년 업무: 체육청소년사업소 ⇒ 평생교육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생략(「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산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로 “승강기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녹색환경과”를 “환경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을 바목으로 하며, 바목(종전 사목) 중 “규제개혁 추진”을 “규제개혁”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종전 제2호) 각 목외의 본문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복지정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무원 후생 및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4호 각 목외의 본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지원과장

가. 현안 및 역점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관리

- 다.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중전 제6호) 각 목외의 본문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삭제하고, 마목을 라목으로,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인적·사회적 재난”을 “인적·물적·사회적 재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경제교통과장

- 가.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 나. 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다.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9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마. 문화센터,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0호 각 목외의 본문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임산물 생산, 화강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마.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1호 각 목외의 본문 “녹색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3호 나목 중 “자전거도로 개설 및”을 “자전거”로 한다.

제7조제14호 중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 18.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 19. 향노화산업에 관한 사항
- 20. 향노화작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21. 농산물수출에 관한 사항
-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8조·제10조”를 “제10조·제13조”로 하고, “제7조·제8조”를 “제8조·제1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4장 중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를 “제2절 수도사업소”로 하고, “제2절 문화센터”를 “제1절 평생교육센터”로 하며, 제3절을 제4절로 하고, “제4절 체육청소년사업소”를 “제3절 체육시설사업소”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4조(종전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종전 제12조)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2조(종전 제15조) 중 “문화센터”를 “평생교육센터”로 하며, 제11조(종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둔다.

② 평생교육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에 둔다.

제13조(종전 제1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2.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17조(종전 제20조) 제1항·제2항 및 제18조(종전 제21조) 중 “체육청소년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하고, 제19조(종전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 중 “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5항”을 “제3항 및 제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창조산업과장”을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제8호·제10호 중 “창조산업과”를 “평생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센터”를 “문화관광과”

로 한다.

②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과장, 경제과장”을 “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복지정책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⑪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전총괄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⑫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재무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⑬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를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총괄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로 한다.

⑮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창조정책과장”을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한다.

⑯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창조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을 “기업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⑰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창조정책과장”을 삭제한다.

⑱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창조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을 “평생교육센터소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⑲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창조정책과”를 “평생교육센터”로 한다.

⑳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을 “기업지원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㉑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유치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㉒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㉓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㉔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㉕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농업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㉖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촌활력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농촌진흥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㉗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㉘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㉙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㉚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별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거창군 보건소	거창군 거창읍 <u>거합대로 3079</u>	거창군 일원
주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주상면 일원
웅양면 보건지소	거창군 웅양면 <u>원촌4길 14-9</u>	웅양면 일원
고제면 보건지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6	고제면 일원
북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313	북상면 일원
위천면 보건지소	거창군 위천면 <u>원학길 325</u>	위천면 일원
마리면 보건지소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45	마리면 일원
남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상면 <u>수남로 1827</u>	남상면 일원
남하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하면 무릉4길 19-27	남하면 일원
신원면 보건지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79	신원면 일원
가조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26	가조면 일원
가북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37	가북면 일원
거기 보건진료소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244-11	거기, 장포, 고대, 원남산, 포덕동, 보광, 송희
강천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강천장교길 19	산포, 우량, 석정, 강천, 금광, 어인, 용전, 군암, 노현
하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하곡1길 3	송산, 아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봉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하구송길 33	탑선, 원기, 원봉계, 와룡, 용초, 구송, 둔기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개명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u>빼재로 1804</u>	개명 1,2구, 수내, 손항, 온곡, 학림, 원궁항, 산양
소정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u>송계로 1205</u>	중산, 소정, 개삼, 탑불
월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u>덕유월성로 1439-14</u>	산수, 월성, 내계, 황점, 병곡
모동 보건진료소	거창군 위천면 <u>빼재로 881</u>	모전, 석동, 원당, 무월, 당산, 황산 1,2구
고학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14	병항, 고신, 고대, 상촌, 신기, 시목, 엄대, 서편, 동편
율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u>풍계1길 41</u>	풍계, 상율, 월화, 영신, 학동, 성락
임불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u>임불1길 5</u>	임불, 남불, 월포, 전척, 고척, 한산
진목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u>진목1길 20</u>	춘진, 진목, 남진, 동령, 신기, 둔동, 외등
지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하면 <u>지산로 735-15</u>	자하, 신기, 장진, 천동, 대사, 오가, 대야, 가천, 용동, 월곡
대현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u>대현길 20</u>	내외탐, 소야, 대현, 비곡, 중유, 예동
양지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u>양지3길 4</u>	월동, 양지, 수옥, 저전, 감악, 구사, 신기, 수다
도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조면 <u>가조가야로 1439</u>	대학동, 화곡, 도산당, 녹동, 부산
용암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u>용암로 717</u>	몽석, 내촌, 송정, 용암, 개금, 공수, 박암, 옥산
중촌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u>가북로 1354</u>	심방, 회남, 중촌, 추동, 해평, 용산, 율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생략) ② <u>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소장,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u>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산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승강기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u> ② <u>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u></p> <p>1. 기획감사실장 가. ~ 마. (생략) <u>바.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u> <u>사.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u></p> <p>2. 주민생활지원실장 가. <u>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나. ~ 사. (생략)</p> <p>3. 행정과장 가. ~ 나. (생략)</p> <p><u>다. 공무원단체 운영지원 및 공무원 후생에 관한 사항</u> 라.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4. 창조산업과장 가. <u>창조도시 전략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u> 나. <u>창조도시 관련 문화산업 육성업무</u> <u>다.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u> <u>라. 에너지 자립도시에 관한 사항</u> 마. 그 밖에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p> <p>5. 재무과장 가. ~ 바. (생략)</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 -----<u>민원봉사실</u>----- -----<u>기업지원과</u>-----, <u>복지정책과</u> -----<u>경제교통과</u>-----<u>산림과</u>, <u>환경과</u>----- ②----- 1.----- 가. ~ 마. (현행과 같음)</p> <p><삭 제> <u>바. 규제개혁</u>----- 6. 복지정책과장 가. <u>복지정책</u>----- ----- 나. ~ 사. (현행과 같음)</p> <p>3. 행정과장 가. ~ 나. (현행과 같음)</p> <p><u>다. 공무원 후생 및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라. (현행과 같음)</p> <p><u>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u></p> <p>4. 기업지원과장 가. <u>현안 및 역점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u> 나. <u>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관리</u> <u>다.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u> 마. ----- ----- 5. ----- 가. ~ 바.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6. <u>민원봉사과장</u> 가. ~ 라.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7. <u>안전총괄과장</u> 가. <u>안전관리업무 총괄</u></p> <p>나. <u>인적·사회적재난</u>,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다. (생략) 라. <u>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u> 마. <u>민방위 및 120봉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u> 바. <u>CCTV관제에 관한 사항</u></p> <p>8. <u>승강기경제과장</u> 가. <u>사회적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u> 나. <u>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다. <u>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u> 라. <u>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u> 마. <u>투자, 통상협력, 국내외 시장 및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u> 바. <u>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u></p> <p>9. <u>문화관광과장</u> 가. ~ 다. (생략) 라. <u>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0. <u>산림녹지과장</u> 가. ~ 나. (생략) 다. <u>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 푸른 거창 조성에 관한 사항</u> 라. <u>임산물 및 화강석 육성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1. <u>녹색환경과장</u> 가. (생략) 나. <u>폐기물 관리, 자연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다. (생략) 라. <u>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 <u>민원봉사실장</u>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u></p> <p>7. ----- 가. <u>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u> 나. <u>인적·물적·사회적 재난</u>----- 다. (현행과 같음)</p> <p><삭제> 라. ----- 마. -----</p> <p>8. <u>경제교통과장</u> 가. <u>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u> 나. <u>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u> 다. <u>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u></p> <p>9.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u> 마. <u>문화센터,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p> <p>10. <u>산림과장</u>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라. <u>임산물 생산, 화강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마. <u>산림휴양에 관한 사항</u></p> <p>11. <u>환경과장</u> 가. (현행과 같음) 나. <u>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u></p> <p>다. (현행과 같음) 라. <u>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u> 마.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p>12. (생 략) 13. 도시건축과장 가. (생 략) 나. <u>자전거도로 개설 및</u>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 마. (생 략)</p> <p>제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13. (생 략) 14.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u>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15. (생 략) 16. <u>귀농인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u> 17. (생 략) 18. <u>마을만들기 육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p> <p>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 건법」 <u>제7조·제8조·제10조</u> 및 같은 법 시행령 <u>제7조·제8조</u>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 ③ (생 략)</p> <p>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법」 <u>제9조</u>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 ③ (생 략)</p> <p><u>제1절 상하수도사업소</u> <u>제11조(설치) ①</u> 법 제114조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상하수도사업소</u>를 둔다. ② <u>상하수도사업소</u>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에 둔다.</p>	<p>12. (현행과 같음) 13. ----- 가. (현행과 같음) 나. <u>자전거</u>----- 다 ~ 마. (현행과 같음)</p> <p>제7조(소관사무)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농촌지도에 관한 사항</u> 15. (생 략) 16. <u>귀농·귀촌에 관한 사항</u> 17. (현행과 같음) 18. <u>농촌진흥에 관한 사항</u> <u>19. 향노화산업에 관한 사항</u> <u>20. 향노화작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u> <u>21. 농산물수출에 관한 사항</u> <u>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p> <p>제8조(설치) ① ----- ----- -----<u>제10조·제13조</u>----- -----<u>제8조·제10조</u>-----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소관사무) ① ----- -----<u>제11조</u>-----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2절 수도사업소</u> <u>제14조(설치) ①</u> ----- ----- -----<u>수도사업소</u>----- ② <u>수도사업소</u>----- -----</p>

현 행	개 정 안
<p><u>제12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u>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u>제15조(소장) 수도사업소</u>----- ----- -----</p>
<p><u>제13조 (생 략)</u></p>	<p><u>제16조 (현행 제13조와 같음)</u></p>
<p><u>제2절 문화센터</u> <u>제1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문화예술활동 등에 관한 편의와 서비스제공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센터를 둔다.</u> <u>② 문화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u></p>	<p><u>제1절 평생교육센터</u> <u>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둔다.</u> <u>② 평생교육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에 둔다.</u></p>
<p><u>제15조(소장) 문화센터에</u>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u>제12조(소장) 평생교육센터</u>----- ----- -----</p>
<p><u>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u> <u>1.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u> <u>2.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p>	<p><u>제13조(소관사무)</u> ----- <u><삭 제></u></p> <p><u><삭 제></u></p> <p><u>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u> <u>2.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u> <u>2.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u> <u>3.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p>
<p><u>제3절 거창사건사업소</u> <u>제17조 ~ 제19조 (생 략)</u></p>	<p><u>제4절</u>----- <u>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와 같음)</u></p>
<p><u>제4절 체육청소년사업소</u> <u>제2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청소년사업소를 둔다.</u> <u>② 체육청소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u></p>	<p><u>제3절 체육시설사업소</u> <u>제17조(설치) ①</u> ----- ----- -----<u>체육시설사업소</u>----- <u>② 체육시설사업소</u>----- -----</p>

현 행	개 정 안
<p><u>제21조(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에</u>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u>제18조(소장) 체육시설사업소</u>----- ----- ----- -----</p>
<p><u>제22조(소관사무)</u>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2. (생략) <u>3.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u></p>	<p><u>제19조(소관사무)</u> ----- ----- 1. ~ 2. (현행과 같음) <u>3.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u></p>
<p><u>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에</u> 따라 읍·면을 둔다. ② 법 <u>제4조제3항</u>에 따른 읍·면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라 조례로 정한다.</p>	<p><u>제23조(설치) ①</u> -----<u>제3항 및 제4조의2</u>----- ----- ② --<u>제4조의2</u>----- -----</p>